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⑩

1995년 4월 6일

국 무 총 리 이 흥 구
국 무 위 원 경 상 현
정보통신부장관

◎ 대통령령 제14571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를 “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

청서 또는 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신고인
2. 사업의 종별
3. 사용의 목적
4. 전기통신방식
5. 설비의 설치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운동(예정)일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허가를 받은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2(표준화의 추진)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생산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5항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취소의”를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의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중 “설비중 확장한 설비의”를 “설비의”로 한다.

1의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또는 신고

제33조제2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시험에 관한 업무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2항 본문,

제10조 본문, 제17조제1항제3호·제2항 본문·제3호, 제19조 단서,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호, 제25조, 제26조 및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중 “체신부령”을 각각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전기통신기본법이 개정(1995. 1. 5, 법률 제4905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증의 대상·절차·방법등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19조의2).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중 자가전기통신설치의 준공확인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 및 전파연구소장에게 각각 위임함(영 제33조). 